PRADIUM

GTX 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3단지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및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주택은 2022. 6. 10.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를 선정하였으나 종전 사업의 취소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공공택지에서 후속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입니다. 후속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종전에 선정이 취소된 사전당첨자(이하 "사전당첨취소자"라 합니다) 중 우선공급을 희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분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합니다.
- 본 주택은 종전 사전당첨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 진행되는 본청약이 아니라, 후속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사전당첨취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선공급입니다. 따라서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는 종전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후속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전당첨취소자에게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후속사업주체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공급받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속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내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한 사전당첨취소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본 주택은 민영주택으로서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을 위한 별도의 청약접수일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사전당첨취소자는 금회 우선공급을 위하여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에 청약홈을 통하여 동 · 호수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명단이 통보된 사실만으로 우선공급 자격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검증을 통과하여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자격의 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 10. 23.입니다.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발표일부터 사전청약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의 전날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전당첨취소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가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 당시 해당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보다 많은 경우
  4.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택 수는 관계 법령에서 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 및 분양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사전청약 취소 통보 이후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내 주택 수가 취소된 사전청약 당첨일 당시 세대 내 주택 수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제3호의 주택 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 여부와 주택 수의 최종 판단은 관계 법령 및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에 따릅니다.
- 거주요건은 취소된 사전청약의 사전당첨자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은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종전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요구한 경우에는 종전 공고에서 정한 거주기간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무 · 생업 · 취학 ·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주택형, 공급면적, 분양가격, 입주예정시기 및 그 밖의 공급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의 동 · 호수는 금회 공급되는 해당 주택형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전산추첨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저층 · 향 · 동 · 호수 등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동 · 호수가 배정된 후에는 주택형 및 동 · 호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주택소유 여부, 거주요건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자격검증을 거쳐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우선공급 희망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동 · 호수를 배정받았더라도 자격검증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전에 사전당첨된 주택의 공급방법과 동일한 공급방법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종전 사전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로 관리되는 등 종전 사전청약의 공급유형과 동일한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금회 당첨자발표일인 2026. 11. 10.을 기준으로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및 그 밖의 제한사항은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금회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첨이 취소되거나, 지정된 계약기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공급하였거나 공급하려던 주택은 같은 규칙 제24조의7제4항 및 제26조의2제4항 · 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세대수와 특별공급 · 일반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완료한 우선공급 희망 의사 확인 결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통보 내용, 관계기관 협의 및 입주자모집 승인 결과를 반영한 세대수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후 우선공급 대상자의 부적격 · 미계약 · 해약 등으로 발생한 주택은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 최초 공급물량에 임의로 합산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4항 및 제26조의2제4항 · 제5항에서 정한 공급방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 법령을 충분히 확인하고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당첨취소, 부적격 처리, 계약체결 불가 및 청약 제한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6995**

| 주택유형 | 해당지역 | 기타경기 | 기타 지역 | 규제지역여부 |
|---|---|---|---|---|
| 민영 | 경기도 파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br>(2025.10.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br>(2026.04.23. 이전부터 계속 거주) | 경기도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br>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비규제지역 |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기간** | **분양가상한제** | **택지유형** |
| 10년 | 3년 | 없음 | 적용 |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 구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 특별공급 접수일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 당첨자발표일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정 | 2026.10.23.(금) | 2026.11.02.(월) | 2026.11.03.(화) | 2026.11.04.(수) | 2026.11.10.(화) | 2026.11.13.(금) ~<br>2026.11.23.(월), 11일간 | 2026.11.25.(수) ~<br>2026.11.29.(일), 5일간 |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 1899-6995)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유선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의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실시합니다. 우선공급 희망자는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며, 사업주체가 우선공급 희망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우선공급 희망자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검증을 거쳐야 하며, 부적격 · 미계약 · 해약 등에 따른 주택은 같은 규칙 제24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  |  |  | 가입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 | – | –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적용 | –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 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유형 | 당첨자 선정 | 예비입주자 선정 | 동호수 결정 |
|---|---|---|---|
| 특별공급 |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br>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br>(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tx운정중앙역시티프라디움.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른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최하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최하층을 희망하여 우선 배정받은 경우, 사전당첨취소에 따른 후속사업에도 불구하고 타 청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전청약 당시의 신청내역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 KB국민인증서 | 토스인증서 | 신한인증서 | 카카오인증서 |
|---|---|---|---|---|---|---|---|
| APT | O |  |  |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0.2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본 아파트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2025.10.2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2026.04.23.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된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됨)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일 정 | 2026.11.02.(월) | 2026.11.03.(화) | 2026.11.04.(수) | 2026.11.10.(화) | 2026.11.13.(금) ~ 2026.11.23.(월), 11일간 | 2026.11.25.(수) ~ 2026.11.29.(일), 5일간 |
| 방 법 |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br>•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 (PC · 모바일) 청약홈 | • GTX운정중앙역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br>(주소 :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481번지 일원) |  |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희망자는 청약홈에서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우선공급 청약접수일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우선공급 희망자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며, 동 · 호수 배정 결과는 당첨자발표일에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경기도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3년 |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45592호(2026.10.1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블록(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67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48층 총472세대 중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135세대, 일반분양 337세대**
  **[특별공급 141세대(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34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4세대, 신생아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주택 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타입) | 주택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세대수 |  |  |  |  |  |  |  |  |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계 | 우선 공급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 일반 공급 세대수 |  |
|  |  |  |  |  |  |  |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생아 | 합계 |  |  |
| 2026000517 | 01 | 060.9995 | 60 | 60.9995 | 22.0337 | 83.0332 | 57.3438 | 140.3770 | 26.9380 | 70 | 37 | 3 | 3 | 4 | 2 | 6 | 3 | 21 | 12 | 2 |
|  | 02 | 084.9594 | 84A | 84.9594 | 27.4805 | 112.4399 | 79.8680 | 192.3079 | 37.5190 | 108 | 31 | 7 | 8 | 11 | 2 | 13 | 7 | 48 | 29 | 3 |
|  | 03 | 084.4998 | 84B | 84.4998 | 29.7097 | 114.2095 | 79.4359 | 193.6454 | 37.3160 | 86 | – | 8 | 9 | 12 | 3 | 15 | 8 | 55 | 31 | 2 |
|  | 04 | 088.5023 | 88 | 88.5023 | 28.3257 | 116.8280 | 83.1985 | 200.0265 | 39.0835 | 129 | 67 | – | 6 | – | 1 | – | – | 7 | 55 | 3 |
|  | 05 | 115.3141 | 115 | 115.3141 | 36.1923 | 151.5064 | 108.4037 | 259.9101 | 50.9239 | 79 | – | – | 8 | – | 2 | – | – | 10 | 69 | 2 |
|  | 합 계 |  |  |  |  |  |  |  |  | 472 | 135 | 18 | 34 | 27 | 10 | 34 | 18 | 141 | 196 | 12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 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가 확인한 우선공급 희망자 명단과 입주자모집 승인 결과를 반영한 수량입니다. 우선공급 희망자는 별도의 청약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사전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거나, 지정된 계약기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공급계약을 해약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제4항 및 제26조의2제4항 · 제5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급합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 공고상(청약) 주택형 | 060.9995 | 084.9594 | 084.4998 | 088.5023 | 115.3141 |
|---|---|---|---|---|---|
| 약식표기 | 60 | 84A | 84B | 88 | 115 |

- **특별공급 공급세대 수**

| 구분(약식표기) |  |  | 60 | 84A | 84B | 88 | 115 | 합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경기도 | 2 | 2 | 2 | – | – | 6 |
|  |  | 서울특별시 | – | – | 1 | – | – | 1 |
|  |  | 인천광역시 | – | 1 | 1 | – | – | 2 |
|  | 국가유공자 |  | – | 1 | 1 | – | – | 2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 | 1 | 1 | – | – | 2 |
|  | 10년이상복무군인 |  | – | 1 | 1 | – | – | 2 |
|  | 북한이탈주민 |  | – | – | 1 | – | – | 1 |
|  | 중소기업근로자 |  | 1 | 1 | – | – | – | 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 거주자(50%) |  | 2 | 4 | 5 | 3 | 4 | 18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  | 1 | 4 | 4 | 3 | 4 | 1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4 | 11 | 12 | – | – | 27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2 | 3 | 1 | 2 | 10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6 | 13 | 15 | – | – | 34 |
| 신생아 특별공급 |  |  | 3 | 7 | 8 | – | – | 18 |
| 합 계 |  |  | 21 | 48 | 55 | 7 | 10 | 141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약식 표기 (타입) | 동–라인 | 구분(층)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공급금액 | 계약 시 | 1회(10%)<br>2027.07.31. | 2회(10%)<br>2028.03.31. | 3회(10%)<br>2028.11.30. | 4회(10%)<br>2029.06.30. | 5회(10%)<br>2029.10.31. | 6회(10%)<br>2030.02.28. | 입주지정일 |
| 60 | 302동 2호<br>303동 2호 | 2층 | 2 | 190,622,000 | 305,078,000 | – | 495,70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49,570,000 | 148,710,000 |
|  |  | 3~4층 | 4 | 190,622,000 | 321,378,000 | – | 512,0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51,200,000 | 153,600,000 |
|  |  | 5~9층 | 10 | 190,622,000 | 334,378,000 | – | 525,0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52,500,000 | 157,500,000 |
|  |  | 10~14층 | 10 | 190,622,000 | 346,378,000 | – | 537,0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53,700,000 | 161,100,000 |
|  |  | 15~19층 | 10 | 190,622,000 | 359,378,000 | – | 550,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55,000,000 | 165,000,000 |
|  |  | 20~24층 | 8 | 190,622,000 | 367,378,000 | – | 558,0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55,800,000 | 167,400,000 |
|  |  | 25~29층 | 10 | 190,622,000 | 374,378,000 | – | 565,0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56,500,000 | 169,500,000 |
|  |  | 30~34층 | 10 | 190,622,000 | 386,378,000 | – | 577,0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57,700,000 | 173,100,000 |
|  |  | 35~37층 | 6 | 190,622,000 | 398,378,000 | – | 589,0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58,900,000 | 176,700,000 |
| 84A | 302동 1,3호<br>303동 1호 | 2층 | 3 | 265,497,000 | 407,203,000 | – | 672,70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67,270,000 | 201,810,000 |
|  |  | 3~4층 | 6 | 265,497,000 | 428,503,000 | – | 694,0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69,400,000 | 208,200,000 |
|  |  | 5~9층 | 15 | 265,497,000 | 445,503,000 | – | 711,0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71,100,000 | 213,300,000 |
|  |  | 10~14층 | 15 | 265,497,000 | 462,503,000 | – | 728,0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72,800,000 | 218,400,000 |
|  |  | 15~19층 | 15 | 265,497,000 | 480,503,000 | – | 746,0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74,600,000 | 223,800,000 |
|  |  | 20~24층 | 12 | 265,497,000 | 490,503,000 | – | 756,0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226,800,000 |
|  |  | 25~29층 | 15 | 265,497,000 | 499,503,000 | – | 765,0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76,500,000 | 229,500,000 |
|  |  | 30~34층 | 15 | 265,497,000 | 516,503,000 | – | 782,0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234,600,000 |
|  |  | 35~38층 | 12 | 265,497,000 | 532,503,000 | – | 798,0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79,800,000 | 239,400,000 |
| 84B | 301동 2호<br>304동 2호 | 2층 | 1 | 264,061,000 | 372,939,000 | – | 637,0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63,700,000 | 191,100,000 |
|  |  | 3~4층 | 4 | 264,061,000 | 385,939,000 | – | 650,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65,000,000 | 195,000,000 |
|  |  | 5~9층 | 10 | 264,061,000 | 412,939,000 | – | 677,0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67,700,000 | 203,100,000 |
|  |  | 10~14층 | 10 | 264,061,000 | 438,939,000 | – | 703,0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70,300,000 | 210,900,000 |
|  |  | 15~19층 | 10 | 264,061,000 | 456,939,000 | – | 721,0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72,100,000 | 216,300,000 |
|  |  | 20~24층 | 8 | 264,061,000 | 473,939,000 | – | 738,0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73,800,000 | 221,400,000 |
|  |  | 25~29층 | 10 | 264,061,000 | 491,939,000 | – | 756,0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75,600,000 | 226,800,000 |
|  |  | 30~34층 | 10 | 264,061,000 | 503,939,000 | – | 768,0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76,800,000 | 230,400,000 |
|  |  | 35~39층 | 10 | 264,061,000 | 516,939,000 | – | 781,0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78,100,000 | 234,300,000 |
|  |  | 40층 이상 | 13 | 264,061,000 | 529,939,000 | – | 794,0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79,400,000 | 238,200,000 |
| 88 | 301동 1,3호<br>304동 1호 | 2층 | 1 | 276,569,000 | 375,846,000 | 37,585,000 | 690,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69,000,000 | 207,000,000 |
|  |  | 3~4층 | 6 | 276,569,000 | 383,119,000 | 38,312,000 | 698,0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69,800,000 | 209,400,000 |
|  |  | 5~9층 | 15 | 276,569,000 | 395,846,000 | 39,585,000 | 712,0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71,200,000 | 213,600,000 |
|  |  | 10~14층 | 15 | 276,569,000 | 425,846,000 | 42,585,000 | 745,0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74,500,000 | 223,500,000 |
|  |  | 15~19층 | 15 | 276,569,000 | 443,119,000 | 44,312,000 | 764,0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76,400,000 | 229,200,000 |
|  |  | 20~24층 | 12 | 276,569,000 | 459,483,000 | 45,948,000 | 782,0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78,200,000 | 234,600,000 |
|  |  | 25~29층 | 15 | 276,569,000 | 476,755,000 | 47,676,000 | 801,0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80,100,000 | 240,300,000 |
|  |  | 30~34층 | 15 | 276,569,000 | 488,574,000 | 48,857,000 | 814,0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81,400,000 | 244,200,000 |
|  |  | 35~39층 | 15 | 276,569,000 | 501,301,000 | 50,130,000 | 828,0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82,800,000 | 248,400,000 |
|  |  | 40층 이상 | 20 | 276,569,000 | 513,119,000 | 51,312,000 | 841,0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84,100,000 | 252,300,000 |
| 115 | 303동 3호<br>304동 3호 | 2층 | 2 | 360,355,000 | 398,677,000 | 39,868,000 | 798,90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79,890,000 | 239,670,000 |
|  |  | 3~4층 | 4 | 360,355,000 | 406,041,000 | 40,604,000 | 807,0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80,700,000 | 242,100,000 |
|  |  | 5~9층 | 10 | 360,355,000 | 443,314,000 | 44,331,000 | 848,0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84,800,000 | 254,400,000 |
|  |  | 10~14층 | 10 | 360,355,000 | 472,405,000 | 47,240,000 | 880,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88,000,000 | 264,000,000 |
|  |  | 15~19층 | 10 | 360,355,000 | 493,314,000 | 49,331,000 | 903,0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90,300,000 | 270,900,000 |
|  |  | 20~24층 | 8 | 360,355,000 | 512,405,000 | 51,240,000 | 924,0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92,400,000 | 277,200,000 |
|  |  | 25~29층 | 10 | 360,355,000 | 533,314,000 | 53,331,000 | 947,0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94,700,000 | 284,100,000 |
|  |  | 30~34층 | 10 | 360,355,000 | 546,950,000 | 54,695,000 | 962,0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96,200,000 | 288,600,000 |
|  |  | 35~39층 | 9 | 360,355,000 | 561,495,000 | 56,150,000 | 978,0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97,800,000 | 293,400,000 |
|  |  | 40층 이상 | 6 | 360,355,000 | 576,041,000 | 57,604,000 | 994,0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99,400,000 | 298,200,000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호수별' 차등 적용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른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에 따른 인지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기 비용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 · 호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전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청약(특별공급,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보관 후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자 판명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의 대출 불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이 단축될 경우 공급대금 납부일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축되는 입주예정일에 따라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 · 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 보증받은 아파트(공동주택)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 조항 | 특별공급 신청유형 | 내용 | 유의사항 |
|---|---|---|---|
| 제1항<br>(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 신혼부부<br>생애최초<br>신생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적용횟수 제한 없음 |
|  | 생애최초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
| 제2항<br>(혼인특례) | 신혼부부 |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제3항<br>(출산특례) | 다자녀가구<br>신혼부부<br>노부모부양<br>신생아 |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br>→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br>***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br>–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br>–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br>–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br>→ 이 경우,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br>–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br>–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br>–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공급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br>※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br>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br>[구분 / 처리방법]<br>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b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br>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br>■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br>■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청약통장 자격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br>–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br>–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r>구 분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br>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br>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br>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br>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br>※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8세대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br>■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추천기관 | [구 분 / 해당 기관]<br>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br>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br>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경기북부사무소)<br>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br>장애인 /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br>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br>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br>■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br>■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